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4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 의 자:정진욱·채현일·민형배

허성무 • 양부남 • 이개호

조인철 • 박지원 • 안도걸

황명선 • 박해철 • 강준현

이언주 • 박희승 • 박용갑

김 유·장종태·전진숙

정일영 · 안태준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120억원 이하(1차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임.

그런데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기준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보호·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

종은 국수·냉면 제조업, LPG 연료 소매업 등 10여 종에 불과하여, 업종이 아니라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구분하 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세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로 정의하여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영세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이 법에서 "영세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		
	액 및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② (생 략)	무)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정부는 영세소상공인의 경		
	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u>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